**«앞면»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이사물품 신고서** | 처리기간 |
| 즉 시 |
| 이사자 | ①성 명 |  | ②국 적 | 한국(비영주권자, 영주권자), 외국인( ) |
| ③직 업 |  | ④여권번호 |   | ⑤주민등록번호 |  - |
| ⑥주 소 | 해외(국가·도시명) :  | ⑦국내전화번호(휴대전화) |  |
| 국내(자세히):  | ⑧E-mail |  @ |
| ⑨거주(예정)기간(내국인은 외국에 거주한 기간, 외국인·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 할 기간) : ~ \* 거주(예정)기간에 따라 아래의 해당란 **□에 “V”표시** 하시기 바랍니다.□1년이상(이사자) □가족동반 6월~1년미만(준이사자) □단독 3월~1년미만, 가족동반 3월~6월미만(단기체류자) |
| 동반가족 | ⑩성 명 | ⑪이사자와의 관계 | ⑫주민등록번호 | ⑬여권번호 | ⑭직 업 | ⑮거주기간 |
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
| 운송내역 | 선적항(국가) | 생략 | B/L(house) No | 생략 |
| 운송의뢰일/국내도착일 | 생략  | 운송회사(Forwarder) | 해외 |  생략  |
| 운 임 | 생략 | 국내 |  대한국제물류  |
| \*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 **□에 “V"표시**하시기 바라며, 뒷면에 신고대상물품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? **있음 없음** |
| 1. 총포·도검·석궁 등 무기류·실탄 및 화약류·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(모의총포 포함) | □ □ |
| 2. 아편·헤로인·코카인·히로뽕·MDMA·대마 등 마약류,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| □ □ |
| 3. 동물(고기, 가죽 털 포함)·식물·과일채소류 등 농림축수산물 및 기타식품류 | □ □ |
| 4.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(호랑이, 코브라, 거북, 악어, 산호, 웅담, 사향 등) | □ □ |
| 5.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, 위조지폐 및 위·변조된 유가증권 | □ □ |
| 6.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,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 | □ □ |
| 7. 신고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도착한 물품, 최근 2년이내에 통관된 이사물품 | □ □ |
| 8.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, 감청설비, 기타 특별히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사항 | □ □ |
|  이 신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 년 월 일 신 고 인 : (서명) |
| 붙임서류 : 1.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1부 2.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(영주권자만 해당)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3.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(영주권자만 해당) 또는 비자 사본 1부(외국인에 한함)  4. Packing List(포장명세서) 1부  5. 선하증권(B/L) 또는 화물운송장(Airway Bill) 사본 1부 6.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1부 7.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 1부(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) |

|  |
| --- |
| 472-01011 민, ‘08.7. 4 개정 210×297mm, 신문용지 54g/㎡ |

**«뒷면»**

|  |
| --- |
| **신고대상 물품 내역** |
| 포장번호 | 품 명 | 상표명 | 모델·규격 | 수량 | 구입가격(US$) | 사용월수 | ※ 세관 기재란 |
|  | 총포(엽총, 모의총포 포함) |  |   |  |  |  |  |
|  | 도검(장식용 포함) |  |  |  |  |  |  |
|  | 컬러 TV(160cm 초과) |  |  cm |  |  |  |  |
|  | 고급가구(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이상) |  |  |  |  |  |  |
|  | 보석 등 고급 장식용구(개당 200만원이상) |  |  |  |  |  |  |
|  | 고급악기류(그랜드피아노 등)(개당 200만원이상) |  |  |  |  |  |  |
|  | 고급카메라, 촬영기(개당 200만원이상) |  |  |  |  |  |  |
|  | 모피의류 |  |  |  |  |  |  |
|  | 골프클럽(full set, 우드,아이언, 퍼터 등)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
| **자동차(이륜자동차 포함) 신고** |
| 차 명 |  | 차대번호 |  | 배기량 |  cc | 연 식 |  |
| 제조국 |  | 승차정원 |   | 최초/본인명의 등록일자 |  / |

 ※ 세관기재란은 기재하지 마시고, 사용월수란에는 사용한 기간을 기재하시고, 개당 또는 조당 해외 취득가격이 US$600이상으로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빈칸에 기재하십시오.

 ※ 현품검사 입회시 물품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공무원에게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 ※ 해외 취득가격이 US$600이상인 물품(3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3월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함) 등 신고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 납부세액의 20%가 가산세로 부과되며,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 **위 임 장**

**1. 위임 받는 자**

**주 소:**

**전 화:**

**주민등록번호:**

**성 명: 서명/날인**

 **위 사람에게 아래 목록에 기재된 이사물품(자동차 유, 무)의**

**귀 세관 통관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.**

 **년 월 일**

**2. 위임 내역 (생략)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B/L 번호 또는 (화물관리번호)** | **선 명** | **적출국** | **포장갯수** | **중량(Kg)** |
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

**3. 위임 하는 자**

**주 소:**

**전 화:**

**주민등록번호:**

**성 명: 서명/날인**

 **세 관 장 귀하**

|  |
| --- |
|  **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·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**  |

